

대전지방법원 2024. 12. 17 선고 2023가단9938 판결 [건물 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11. 26.

판결 선고 2024. 1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
⑦부분 20m²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,
나. 25,461,829원과 2024. 7. 20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,300,000원의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, 갑 제2, 3, 5, 9 내지 1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, 2023. 11.부터 2024. 6.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5,461,829원에서 임대차보증금 40,000,000원을 공제한 25,461,829원과 2024. 7. 20.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,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권세진

별지